

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

2018. 10. 25.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8. 10. 15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18. 10. 19.

다. 상정일자 : 제225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(2018. 10. 25.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

가. 제안이유

지방교육 정책과 관련,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교육과 소통을 증진하고 협력방안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“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”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 구의회 동의를 받기 위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협의회 기능, 구성, 임원의 임기
- 2) 총회 및 의결, 의안제출, 안건배부, 의견청취, 회의결과 조치
- 3) 실무협의회, 경비부담, 회계보고 및 결산, 가입 및 탈퇴사회 보장 협의 운영 조례”에 반영되어 있음

3. 검토보고 (이주현 전문위원)

○ 이진 “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”은 마포구청장이 2018.10.15일 의회에 제출하여 2018.10.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

[동의안 제출배경]

- “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”는 지방교육 정책에 대하여 시·군·구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교류와 정보의 공유 등 협력을 도모하여 교육의 수준과 품질을 높이고자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구성된 것임.
-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르면 협의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우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금번 임시회에 제출하게 된 것임.(해당 법규 별첨1)

[협의회 구성개요]

- 협의회 회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되며 2018.3.31일 최초 31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모여 창립 되었으며, 현재는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226개중 35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음.
- 협의회 경비는 연회비 5백만원으로 공동사무 처리와 공동사업의 실시 등을 위해 쓰이게 됨.
- 한편, 협의회 회장은 올해 10월10일 창립 총회에서 도봉구청장이 선출되어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음.

[협의회 참여 타당성·필요성 여부 : 타당함]

- 우리구가 서울 강남 등 타 지역에 비해 진학률, 학습환경 등 교육여건이 다소 미흡한 상황임.
- 이에따라, 우리 마포 지역의 교육수준 향상을 위해 지방간 정보의 공유와 우수사례 확산, 교육정책 협력, 제도개선 등의 기능을 하는 협의회 가입은 필요하고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

[예산 확보의 가능성 : 가능함]

- 협의회 가입 연회비는 5백만원으로 2019년 예산에 편성 확보할 계획이며, 얻어 오는 이익에 비해 과도한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

[협의회 규약 조문·내용의 적법성 여부 : 적법함]

- 규약의 조문과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52조(행정협의회 구성)에서 제158조(협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)까지와 동법 시행령 제95조(행정협의회 구성 기준)에서 제102조(협의체 설립 신고 등)까지의 규정을 반영하여 적법하게 작성되어 있음(해당 법규 별첨2,3)
- 특히, 이 건 규약은 2018.3.31협의회 창립총회시 확정된 표준 규약으로 협의회에 가입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하게 준용하고 있는 등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
- 다만, 부칙에서 창립총회시 임원 임기를 2018.6.30일까지로 정한 것은 지방선거로 단체장의 변경 가능성을 반영한 것으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

[검토 종합의견]

○ 위와 같이 동의안 제출배경과 협의회 구성현황, 협의회 참여의 타당성과 필요성, 예산 확보의 가능성, 규약 조문내용의 적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이건 “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”을 승인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

○ 아울러, 규약 제16조(가입 및 탈퇴)에 의하면 협의회 가입후 탈퇴를 원할 경우 탈퇴서를 제출하면 되므로 가입에 따른 부담이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5. 토론요지 : 없음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8. 기타 : 없음